

4. 建築法施行規則 改正令(案) 立法豫告

資料提供：建設部

1. 개정 사유

법과 시행령이 국민편의 증진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의 방향으로 '92.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골자

가. 건축허가 및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서식을 정비함.

1. 건축허가 관련 서식 34종의 내용을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전산화에 대비하여 간소화하고, 특히 건축신고사 사용하는 서식의 기재내용을 대폭 줄이고 단면도 등 3종의 첨부서류를 생략토록 함.

2. 건축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설계도서중 구조계산서, 실내마감도와

시방서 등의 제출을 생략토록 함.

3.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는 공사감리보고서, 철거신고서, 자재 및 인력소요 파악을 위한 공사계획서의 양식을 새로이 정함.

나. 건축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새로이 정함.
건축물의 공사중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를 건축물의 높이,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간의 거리 등 항목별로 100분의 1이상 100분의 5의 범위로 정함.

다. 기타 미비점 보완
도시설계의 내용표기방법 등 세부작성 기준을 정함.

※ 이 규칙안은 건설부가 4월 21일 입법 예고 한 것으로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